

산재보험 재심사 재결사례

팔의 장애

○○공사 원주지사 원주명륜(2)관리소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근무중 식사를 하기 위하여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 자가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피재되어 요양을 신청한 경우

(93-476호 93. 5. 24.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이 ○ ○

주소 : 원주시 명륜동

원 처 분 청 : 원주 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 재 근 로 자 성 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공사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원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2. 12. 12.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공사 원주지사 원주명륜(2)관리소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 11. 20. 09:00부터 경비근무중 1992. 11. 21. 01:20경 식사를 하기 위하여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 자가에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하퇴부, 2)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3) 우측 슬와동맥 파열, 4) 우측 비골신경 파열”에 대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은 피재 장소가 근무지를 벗어나 사업주 지배관리 밖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 오토바이의 소유 및 유지관리가 피재자에게 있는 것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순수한 사적행위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결정에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 근무 당일 24:00-02:00 까지 야식시간이나 관리소내 별도의 식당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무시간내 식사는 인근의 식당에서 하는 것이 통례화 되었으며 야간에는 심야영업을 하지않아 주로 근무자가 교대로 자택에 가서 식사를 하는 실정으로 야간근무의 관행상 심야에 인근지역의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않아 부득이 자택에 가서 식사를 하여야 하는 형편상 소정 근무시간중의 식사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 내지는 근무의 연속으로 사업주의 명령 내지는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피재자는 자의적인 행동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 동기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라며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3. 4.24. 이○○)
2. 답변서(1993. 4. 29. 원처분청)
3.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4. 4. 7)
4. 요양결정 결의서 사본(1992. 12. 12. 원처분청)
5. 최초 요양신청서 사본(1992. 12. 5. 이○○)
6. 재해조사 복명서(1992. 12. 원처분청)
7. 사고보고서 사본(1992. 12. 5. 이○○)
9. 문답서 사본(1992. 11. 22. 이○○)
10. 복무규정(○○공사)
11.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공사 원주지사 원주명륜(2)관리소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 11. 20. 09:00부터 경비업무중 1992. 11. 21. 01:20경 식사를 하기 위하여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 자가에 가다가 발생

한 교통사고로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하퇴부, 2)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3) 우측 슬와동맥 파열, 4) 우측 비골신경 파열”에 대하여 요양 신청하자 원처분청은 피재장소가 근무지를 벗어나 사업주 지배관리 밖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 오토바이의 소유 및 유지권이 피재자에게 있는 것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순수한 사적행위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요양 불승인 하였던바 이에 청구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 근무 당일 24:00~02:00까지 야식시간이나 관리소내 별도의 식당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무시간내 식사는 인근의 식당에서 하는 것이 통례화 되었으며, 야간에는 심야영업을 하지 않아 주로 근무자가 교대로 자택에 가서 식사를 하는 실정으로, 야간근무의 관행상 심야에 인근지역의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않아 부득이 자택에 가서 식사를 하여야 하는 형편상 소정 근무시간중의 식사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 내지는 근무의 연속으로 사업주의 명령 내지는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피재자는 자의적인 행동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 동기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므로 이건을 면밀히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비원으로서 24시간 격일제근무를 하며 이중 근무당일 24:00-02:00까지 야식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심야 시간대로 관리사무소내 별도의 식당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인근의 식당도 이 시간대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여 근무장소에서 인근에 있는 경비원에 한하여 관행적으로 귀가하여 식사후 복귀하였다 하더라도 ○○공사 경비원 복무규정 제8조 제1호에 “입초 경비중 지정된 위치를 무단 이탈하거나 교대자 없이 휴식할 수 없다” 이는 규정을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달리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